
2026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안)

- 국가근로장학금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2026. 2.

한국장학재단
학생진로장학부

목 차

I. 사업 개요 및 지원 현황

- 1. 사업 목적 및 추진 경과 1
- 2. 지원 현황 2

II. 2025년도 주요 성과

- 1. 국가근로장학금 3
- 2.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4

III. 2026년도 주요 계획

- 1. 국가근로장학금 5
- 2.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7

IV. 세부 사업별 지원방안

- 1. 국가근로장학금 8
- 2.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10

V. 향후 계획 및 일정 11

참고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세부사업 비교표 12

국가근로장학금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변경 사유								
지원 예산	■ 사업비: 4,551억 원 ○ 교내장학금: <u>2,491억 원</u> ○ 교외장학금: <u>2,060억 원</u>	■ 사업비: 4,987억 원 ○ 교내장학금: <u>2,260억 원</u> ○ 교외장학금: <u>2,727억 원</u>	▷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지원을 위한 지원 인원 및 시급단가 인상								
시급 단가	■ 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장학금: 10,030원 ※ 단,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에 한하여 교외근로 시급 적용: <u>12,430원</u>(대학 대응투자 20% 이상) ○ 교외장학금: 12,430원 ※ 단, '26. 1~2월분 시급은 '26년도 최저임금 변동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교내장학금: 10,320원 ※ 단,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에 한하여 교외 근로 시급 적용: <u>12,790원</u>(대학 대응투자 20% 이상) ○ 교외장학금: 12,790원 ※ 단, '27. 1~2월분 시급은 '27년도 최저임금 변동 등에 따라 조정 가능									
성적 기준 완화	■ 근로장학생 선발요건 <table><tr><th colspan="2">기본 자격요건</th></tr><tr><td>성적</td><td>C^o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td></tr></table>	기본 자격요건		성적	C ^o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근로장학생 선발요건 <table><tr><th colspan="2">기본 자격요건</th></tr><tr><td>성적</td><td>C^o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단, 학생이 장애인,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로아동)인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가능 </td></tr></table>	기본 자격요건		성적	C ^o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단, 학생이 장애인,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로아동)인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가능	▷ 장학생 선발 요건 완화 ※ 국가장학금 장학생 선발 기준 준용
기본 자격요건											
성적	C ^o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기본 자격요건											
성적	C ^o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단, 학생이 장애인,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로아동)인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가능										
근로 기관 분류	■ 근로기관 등록 - 기관은 대학과의 사업자등록 번호 일치 여부에 따라 크게 '교내'와 '교외'로 분류 (※ 분류 변경 불가) ※ 단, 산학협력단(입주기업 제외)과 부설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의 경우 교내로 분류(26.1학기부터 적용) * 교내근로가 원칙이나, 대학 외 (학교 부지 밖) 위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교외근로' 등록 가능 (전산 업로드 필수)	■ 근로기관 등록 - 기관은 대학과의 사업자등록 번호 일치 여부에 따라 크게 '교내'와 '교외'로 분류 (※ 분류 변경 불가) ※ 단, <u>대학과 주소지가 동일한</u> 산학협력단(입주기업 제외)과 부설(속)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의 경우 교내로 분류 * (좌동)	▷ 합리적인 장학금 지원을 위한 교내·외 분류 기준 개선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변경 사유																																																																																												
장학금 지급 기준	■ 지급 주체 및 기준 ○ (지급 기준) 시급 단가 x 인정 근로시간	■ 지급 주체 및 기준 ○ (지급 기준) 시급 단가 x 인정 근로시간 ※ 단, 지급액 및 교부금에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른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을 수 있음(교내근로의 경우, 대응 투자 20% 이상 유의)	▷국고금 관리법 준수한 장학금 지급 기준 개선																																																																																												
교외근로 의무비율	■ 교외근로 의무비율: 29%	■ 교외근로 의무비율: 36%	▷ 교외근로 예산 확대 고려																																																																																												
장학생 자격관리	■ 장학생 제재 사유 - 기타 근로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학생 제재 사유 - 기타 근로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성실(근태 및 업무태도 불량 등)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근로장학생 제재 사유 태도 기준 구체화																																																																																												
근로기관 점검서식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table><tr><th colspan="2">문항</th><th>여</th><th>부</th></tr><tr><td>1</td><td>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각종 안전·표지(비상구 등) 부착 여부</td><td>2</td><td></td></tr><tr><td>2</td><td>비상연락망 구비 및 근로장학생 안내 여부</td><td>2</td><td></td></tr><tr><td>3</td><td>소화기 구비 및 위치 안내 여부</td><td>2</td><td></td></tr><tr><td>4</td><td>화기관리책임자 지정 여부</td><td>2</td><td></td></tr><tr><td>5</td><td>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품 구비 여부</td><td>2</td><td></td></tr><tr><td>6</td><td>안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td><td>5</td><td></td></tr><tr><td>7</td><td>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td><td>5</td><td></td></tr><tr><td>+</td><td>질문 6, 7번이 '부'인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존재하는지 여부</td><td colspan="2">점수미반영</td></tr><tr><td colspan="2">합 계</td><td></td><td></td></tr></table>	문항		여	부	1	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각종 안전·표지(비상구 등) 부착 여부	2		2	비상연락망 구비 및 근로장학생 안내 여부	2		3	소화기 구비 및 위치 안내 여부	2		4	화기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2		5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품 구비 여부	2		6	안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	5		7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	5		+	질문 6, 7번이 '부'인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존재하는지 여부	점수미반영		합 계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table><tr><th rowspan="2">번호</th><th rowspan="2">질의</th><th rowspan="2">세부기준</th><th colspan="2">결과</th></tr><tr><th>여</th><th>부</th></tr><tr><td>1</td><td>근로 전 장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td><td>① 안전교육 관련 중빙자료 구비 여부 ② 안전교육 자료 비치 여부</td><td></td><td></td></tr><tr><td>2</td><td>비상구 및 대피로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표지가 명확히 부착되어있는가?</td><td>① 대피로 확보 여부 ② 안전표지 부착 여부</td><td></td><td></td></tr><tr><td>3</td><td>비상연락망(담당자 등이 최신 상태로 개선했는지) 근로장학생에게 안내 되었는가?</td><td>①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② 최신화 여부 ③ 근로장학생 대상 안내 여부</td><td></td><td></td></tr><tr><td>4</td><td>사용 가능한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근로장학생에게 사용법 등이 안내되었는가?</td><td>① 소화기 위치 표시 ② 소화기 사용 방법(압력계 등) 여부 ③ 사용법 교육 여부</td><td></td><td></td></tr><tr><td>5</td><td>화기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화기 사용 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td><td>① 화기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② 화기 사용 시 감독 여부</td><td></td><td></td></tr><tr><td>6</td><td>구급약품(대, 반상고, 소독약, 화상연고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구비 위위가 근로장학생에게 안내되었는가?</td><td>① 구급세트 구비 여부 ② 비치 장소 안내 여부</td><td></td><td></td></tr><tr><td>7</td><td>근로장학생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td><td>① 안전 수칙 교육 여부 ② 전선·기기 등 정리 여부</td><td></td><td></td></tr><tr><td>+</td><td>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td><td>① 보안 대책 마련 여부 ②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td><td>점수미반영</td><td>점수미반영</td></tr><tr><td colspan="2">합 계</td><td></td><td></td><td></td></tr></table>	번호	질의	세부기준	결과		여	부	1	근로 전 장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① 안전교육 관련 중빙자료 구비 여부 ② 안전교육 자료 비치 여부			2	비상구 및 대피로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표지가 명확히 부착되어있는가?	① 대피로 확보 여부 ② 안전표지 부착 여부			3	비상연락망(담당자 등이 최신 상태로 개선했는지) 근로장학생에게 안내 되었는가?	①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② 최신화 여부 ③ 근로장학생 대상 안내 여부			4	사용 가능한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근로장학생에게 사용법 등이 안내되었는가?	① 소화기 위치 표시 ② 소화기 사용 방법(압력계 등) 여부 ③ 사용법 교육 여부			5	화기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화기 사용 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화기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② 화기 사용 시 감독 여부			6	구급약품(대, 반상고, 소독약, 화상연고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구비 위위가 근로장학생에게 안내되었는가?	① 구급세트 구비 여부 ② 비치 장소 안내 여부			7	근로장학생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① 안전 수칙 교육 여부 ② 전선·기기 등 정리 여부			+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① 보안 대책 마련 여부 ②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점수미반영	점수미반영	합 계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상세화
문항		여	부																																																																																												
1	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각종 안전·표지(비상구 등) 부착 여부	2																																																																																													
2	비상연락망 구비 및 근로장학생 안내 여부	2																																																																																													
3	소화기 구비 및 위치 안내 여부	2																																																																																													
4	화기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2																																																																																													
5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품 구비 여부	2																																																																																													
6	안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	5																																																																																													
7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	5																																																																																													
+	질문 6, 7번이 '부'인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존재하는지 여부	점수미반영																																																																																													
합 계																																																																																															
번호	질의	세부기준	결과																																																																																												
			여	부																																																																																											
1	근로 전 장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① 안전교육 관련 중빙자료 구비 여부 ② 안전교육 자료 비치 여부																																																																																													
2	비상구 및 대피로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표지가 명확히 부착되어있는가?	① 대피로 확보 여부 ② 안전표지 부착 여부																																																																																													
3	비상연락망(담당자 등이 최신 상태로 개선했는지) 근로장학생에게 안내 되었는가?	①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② 최신화 여부 ③ 근로장학생 대상 안내 여부																																																																																													
4	사용 가능한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근로장학생에게 사용법 등이 안내되었는가?	① 소화기 위치 표시 ② 소화기 사용 방법(압력계 등) 여부 ③ 사용법 교육 여부																																																																																													
5	화기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화기 사용 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화기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② 화기 사용 시 감독 여부																																																																																													
6	구급약품(대, 반상고, 소독약, 화상연고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구비 위위가 근로장학생에게 안내되었는가?	① 구급세트 구비 여부 ② 비치 장소 안내 여부																																																																																													
7	근로장학생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① 안전 수칙 교육 여부 ② 전선·기기 등 정리 여부																																																																																													
+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① 보안 대책 마련 여부 ②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점수미반영	점수미반영																																																																																											
합 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변경 사유
지원 예산	■ 사업비: <u>550억 원</u>	■ 사업비: <u>578억 원</u>	▷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지원을 위한 예산·목표 인원 확대 및 시급 단가 인상
목표 인원	■ 멘토 <u>13,700명</u>	■ 멘토 <u>14,000명</u>	
시급 단가	■ 멘토링 시급 단가 ○ 시간당 <u>12,430원</u>	■ 멘토링 시급 단가 ○ 시간당 <u>12,790원</u>	
예산 배정	■ (연간 배정)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별 연간예산 신청금액 및 과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1학기 집행실적에 따라 2학기 예산 조정 배정 - 권역별 주관대학: 사업운영계획서 (별첨 1) 검토 후 예산 우선배정 - 권역별 주관대학 외: (중략) [권역별 주관대학 외 참여대학 예산 배정(안)] ■ (기본방향) 대학 정기에 예산 신청 금액과 '23년도·'24년도 실적 비교를 통한 대학별 배분 기준 산출로 예산 배정 시 공정성 부여 (후략) [대학별 배분점수 산출방식] ■ 대학별 배분점수(100%) $= \frac{(A/\sum A^*) \times 75\% + (B/\sum B^*) \times 10\% + (C/\sum C^*) \times 5\% + (D/\sum D^*) \times 10\%}{\text{(후략)}}$	■ (연간 예산 배정) '26년 총 사업 예산 범위 내 대학별 연간 예산 신청액 및 전년도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1학기 집행 실적에 따라 2학기 예산 조정 배정 - (삭제) - (삭제) [연간 예산 배정(안)] ● (배분 기준) '26년 대학 신청 예산과 과거 3년간('23~'25년)의 집행실적을 비교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학별 배분 점수를 통한 차등 부여 ☞ 대학별 배분 기준 $= \frac{\text{Min}\{ '26년 대학 신청예산, \text{Max}\{ '23년, '24년, '25년 집행예산 \} \times \text{대학별 배분 점수} \}}{\text{(후략)}}$ ☞ 권역별 주관대학: 사업운영계획서 검토 후 예산 우선 배정 ● (배분 점수) '25년도 대학별 사업 운영실적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수치	▷ 예산 집행을 제고 등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예산 배정 기준 개선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변경 사유																																																																																												
장학금 지급 기준	■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액) 시간당 단가 x 인정 멘토링 활동시간	■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액) 시간당 단가 x 인정 멘토링 활동시간 ※ 단, 지급액 및 교부금에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른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고금 관리법 준수한 장학금 지급 기준 개선																																																																																												
활동 기관	■ 해당사항 없음	■ 자기주도학습센터로 활동기관 확대	▷ 국정과제 이행 및 사업 활성화																																																																																												
장학생 자격관리	■ 장학생 제재 사유 - 기타 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학생 제재 사유 - 기타 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성실 (근태 및 업무태도 불량 등)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장학생 제재 사유 태도 기준 구체화																																																																																												
근로기관 점검서식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table><tr><th colspan="2">문항</th><th>여</th><th>부</th></tr><tr><td>1</td><td>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각종 안전·표지(비상구 등) 부착 여부</td><td>2</td><td></td></tr><tr><td>2</td><td>비상연락망 구비 및 근로장학생 안내 여부</td><td>2</td><td></td></tr><tr><td>3</td><td>소화기 구비 및 위치 안내 여부</td><td>2</td><td></td></tr><tr><td>4</td><td>화기관리책임자 지정 여부</td><td>2</td><td></td></tr><tr><td>5</td><td>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 구비 여부</td><td>2</td><td></td></tr><tr><td>6</td><td>안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td><td>5</td><td></td></tr><tr><td>7</td><td>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td><td>5</td><td></td></tr><tr><td>+</td><td>질문 6, 7번이 '부'인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존재하는지 여부</td><td colspan="2">점수미반영</td></tr><tr><td colspan="2">합 계</td><td></td><td></td></tr></table>	문항		여	부	1	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각종 안전·표지(비상구 등) 부착 여부	2		2	비상연락망 구비 및 근로장학생 안내 여부	2		3	소화기 구비 및 위치 안내 여부	2		4	화기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2		5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 구비 여부	2		6	안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	5		7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	5		+	질문 6, 7번이 '부'인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존재하는지 여부	점수미반영		합 계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table><tr><th rowspan="2">번호</th><th rowspan="2">질의</th><th rowspan="2">세부기준</th><th colspan="2">결과</th></tr><tr><th>여</th><th>부</th></tr><tr><td>1</td><td>근로 전 장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td><td>① 안전교육 관련 증빙자료 구비 여부 ② 안전교육 자료 비치 여부</td><td></td><td></td></tr><tr><td>2</td><td>비상구 및 대피로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표지가 명확히 부착되어있는가?</td><td>① 대피로 확보 여부 ② 안전표지 부착 여부</td><td></td><td></td></tr><tr><td>3</td><td>비상연락망(담당자 등)이 최신 상태로 가시되어있으며 근로장학생에게 안내되었는가?</td><td>①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② 최신화 여부 ③ 근로장학생 대상 안내 여부</td><td></td><td></td></tr><tr><td>4</td><td>사용 가능한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근로장학생에게 사용법 등이 안내되었는가?</td><td>① 소화기 위치 표시 ② 소화기 사용 방법(압력계 등) 여부 ③ 사용법 교육 여부</td><td></td><td></td></tr><tr><td>5</td><td>화기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화기 사용 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td><td>① 화기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② 화기 사용 시 감독 여부</td><td></td><td></td></tr><tr><td>6</td><td>구급함·붕대·방향표, 소독약·화상냉각수 등 구급품이 있으며 구비 위치가 근로장학생에게 안내되었는가?</td><td>① 구급세트 구비 여부 ② 비치 장소 안내 여부</td><td></td><td></td></tr><tr><td>7</td><td>근로장학생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td><td>① 안전 수칙 교육 여부 ② 전선·기기 등 정리 여부</td><td></td><td></td></tr><tr><td>+</td><td>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td><td>① 보완 대책 마련 여부 ②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td><td>점수미반영</td><td>점수미반영</td></tr><tr><td colspan="2">합 계</td><td></td><td></td><td></td></tr></table>	번호	질의	세부기준	결과		여	부	1	근로 전 장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① 안전교육 관련 증빙자료 구비 여부 ② 안전교육 자료 비치 여부			2	비상구 및 대피로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표지가 명확히 부착되어있는가?	① 대피로 확보 여부 ② 안전표지 부착 여부			3	비상연락망(담당자 등)이 최신 상태로 가시되어있으며 근로장학생에게 안내되었는가?	①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② 최신화 여부 ③ 근로장학생 대상 안내 여부			4	사용 가능한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근로장학생에게 사용법 등이 안내되었는가?	① 소화기 위치 표시 ② 소화기 사용 방법(압력계 등) 여부 ③ 사용법 교육 여부			5	화기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화기 사용 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화기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② 화기 사용 시 감독 여부			6	구급함·붕대·방향표, 소독약·화상냉각수 등 구급품이 있으며 구비 위치가 근로장학생에게 안내되었는가?	① 구급세트 구비 여부 ② 비치 장소 안내 여부			7	근로장학생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① 안전 수칙 교육 여부 ② 전선·기기 등 정리 여부			+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① 보완 대책 마련 여부 ②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점수미반영	점수미반영	합 계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상세화
문항		여	부																																																																																												
1	근로중 사고 발생시 대피로 및 각종 안전·표지(비상구 등) 부착 여부	2																																																																																													
2	비상연락망 구비 및 근로장학생 안내 여부	2																																																																																													
3	소화기 구비 및 위치 안내 여부	2																																																																																													
4	화기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2																																																																																													
5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 구비 여부	2																																																																																													
6	안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	5																																																																																													
7	안전한 근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점검자의 판단)	5																																																																																													
+	질문 6, 7번이 '부'인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존재하는지 여부	점수미반영																																																																																													
합 계																																																																																															
번호	질의	세부기준	결과																																																																																												
			여	부																																																																																											
1	근로 전 장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① 안전교육 관련 증빙자료 구비 여부 ② 안전교육 자료 비치 여부																																																																																													
2	비상구 및 대피로에 장애물이 없고 안전표지가 명확히 부착되어있는가?	① 대피로 확보 여부 ② 안전표지 부착 여부																																																																																													
3	비상연락망(담당자 등)이 최신 상태로 가시되어있으며 근로장학생에게 안내되었는가?	① 비상연락망 구비 여부 ② 최신화 여부 ③ 근로장학생 대상 안내 여부																																																																																													
4	사용 가능한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근로장학생에게 사용법 등이 안내되었는가?	① 소화기 위치 표시 ② 소화기 사용 방법(압력계 등) 여부 ③ 사용법 교육 여부																																																																																													
5	화기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화기 사용 시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① 화기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② 화기 사용 시 감독 여부																																																																																													
6	구급함·붕대·방향표, 소독약·화상냉각수 등 구급품이 있으며 구비 위치가 근로장학생에게 안내되었는가?	① 구급세트 구비 여부 ② 비치 장소 안내 여부																																																																																													
7	근로장학생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① 안전 수칙 교육 여부 ② 전선·기기 등 정리 여부																																																																																													
+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① 보완 대책 마련 여부 ②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점수미반영	점수미반영																																																																																											
합 계																																																																																															

I**사업 개요**☐ **사업 목적**

-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직업체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추진 경과**

- '05년, 지방 전문대학 대상으로 근로장학사업 시범 운영
- '06년, 전국 전문대학 대상으로 근로장학사업 확대 운영
- '09년, 4년제 대학 대상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설(한국장학재단 소관)
- '10년,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전문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 통합
- '12년, 지원대상 대학 범위를 원격대학까지 확대
- '13년, '방학 중 교외근로 프로그램' 시범 운영
- '14년, '기관/기업 국가근로장학 포털시스템' 신설·구축 및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도입·운영
- '15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 중점대학 유형' 신설
- '17년,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신설
- '19년, 9개 유형 사업을 2개 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및 4개 유형(교내, 교외, 봉사유형, 취업연계유형)으로 재구조화
- '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한시 운영 및 '위치기반(GPS)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신규 도입·운영
- '24년, 지원 대상 기준을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내로 확대 운영

□ 지원현황

- 최근 3년 간 47.1만 명의 대학생에게 사회·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약 1조 3,184억 원의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표 1. 최근 3개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 분			'24	'25	'26	합계
합계(A=B+E)		지원금액	391,311	370,610	556,461	1,318,382
		지원인원	150,785	154,967	165,000	470,752
국가 근로 세부	국가근로(B=C+D)	지원금액	348,910	327,877	498,661	1,175,448
		지원인원	139,923	143,140	151,000	434,063
	교내근로(C)	지원금액	153,639	160,003	225,967	539,609
		지원인원	80,836	90,221	85,000	256,057
	교외근로(D)	지원금액	195,271	167,874	272,694	635,839
		지원인원	59,087	52,919	66,000	178,006
대청교 세부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E)	지원금액	42,401	42,733	57,800	142,934
		지원인원	10,862	11,827	14,000	36,689

※ 2024년은 최종 실적 기준(사업기간: 매년 3월 ~ 차년도 2월), 2025년은 12월 말 기준 실적

※ 2026년은 예산 기준

【표 2. 국가근로장학금 세부 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근로내용	지원실적		예산
				'24	'25	'26
합 계				391,311	370,610	556,461
교내 근로	일반 교내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151,121	157,086	225,967
	봉사 유형	장애대학생 봉사	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	2,370	2,623	
		외국인유학생 봉사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148	294	
교외 근로	일반 교외근로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 재단 운영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179,403	155,167	272,694
	취업 연계	취업연계 중점대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전공 관련 근로기관의 업무 경험 제공	15,868	12,707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청소년(초·중·고등학생 등)에게 학습지원 등 멘토링 활동	42,401	42,733	57,800

※ 2024년은 최종 실적 기준(사업기간: 매년 3월 ~ 차년도 2월), 2025년은 12월 말 기준 실적

※ 2026년은 예산 기준

①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금 지원 강화

- (지원 인원) 더 많은 대학생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국가근로 장학금(교내근로)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1만 명 확대
 ※ 지원 인원: (교내) 75,000명 → **96,000명**
- (단가 인상) 높은 업무 난이도를 고려하여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의 시급 단가 인상(교내근로이나 교외근로 시급 적용)
- (지원 규모) 2026년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498,661백만 원 확보로 전년 대비 43,557백만 원 증액, 지원 대상자 확대

□ 장학생 역량 개발을 위한 교내근로지 발굴 도모

- 행정·사무보조 외 연구·교육보조 등 근로장학생 일 경험 제고를 위해 대학의 교내근로지 발굴 독려
 - (예산 배정) 교내근로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교외근로 의무비율 전년 대비 완화(43% → 29%)하였으며, 확대 실적을 예산 배분 평가 항목으로 신규 반영
 - (장학생 배정) 교내근로지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여 장학생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관별 배정인원 관리 기준 삭제

□ 학업과 병행 가능한 범위 내 장학생 근로활동 자율성 확대

- (근로시간 확대) 전년 대비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을 확대(520시간→640시간)하여 근로활동 가능 시간 확대
 - 단, 최대근로시간 예외 대상자의 장학금 과다 수혜 방지를 위하여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상한선 적용(최대 800시간)
- (근로시간 관리) 학기 중 최대근로시간 적용 기준 변경(주 →월 단위)하여 탄력적 근로활동 가능
- (온라인 수업)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수업 시간에 근로활동 허용하여 근로활동 유연성 확보(근로활동 중 수강은 금지)

②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멘토링 활동기준 개선을 통한 사업 활성화

- (학기당 최대활동시간 확대) 학기당 최대활동시간을 기존 520시간에서 640시간으로 확대하여 멘토링 활성화 도모
- (활동시간 관리) 학기 중 최대활동시간 적용 기준 변경(주 → 월 단위)하여, 멘토링 활동의 유연성 확보
- (월당 최대활동시간 예외 대상 신설)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에 한해 학기중 월당 최대 160시간까지 활동 가능

[활동 가능 시간]

연간 최소	1일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학기당* 최대
		월당 최대	주당 최대	
10시간	8시간	80시간	40시간	640시간

* (1학기) '25. 3. ~ 8. / (2학기) '25. 9. ~ '26. 2.

- (봉사시간 인정) 멘토링 활동시간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 활성화 기대
- (원거리 인센티브 기준완화) 원거리 인센티브 입력 시, 일, 주 최대 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하여 지원 활성화

□ 대학별 연간 (가)예산 통지 체계 확립

- 대학별 연간 예산이 확정 통지되는 정규 일정(매년 3월 말~4월 초)에 앞서, (가)예산을 2월 중 잠정 안내함으로써, 대학의 당해년도 사업 운영 예측 가능성 확대 및 예산 집행률 향상 도모



2026년도 주요 계획

①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금 지원 강화

- (지원단가) 근로시간 당 교내·외 지원단가 인상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마련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 지원단가: (교내) 10,030원 → **10,320원**, (교외) 12,430원 → **12,790원**

※ 단,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에 한하여 교외근로 시급 적용(대학 대응투자 20% 이상)

☐ 근로장학생 선발 요건 완화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장학생 기본자격요건(성적) 완화
- (개선) 국가장학금 장학생 선발 기준을 준용하여 학생이 장애인,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가능

※ 2026년 업무처리기준 Ⅰ-2 사업 개요 > 근로장학생 선발요건

☐ 합리적인 장학금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근로기관) 대학과의 사업자등록번호 일치 여부에 따른 교내·외 분류 기준 개선
- 대학과 주소지가 동일한 산학협력단(입주기업 제외)과 부설(속)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의 경우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교내근로 운영

※ 단, 대학 외(학교 부지 밖) 위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교외근로 운영 가능

※ 2026년 업무처리기준 Ⅱ-2 근로기관 등록 및 배정 > 근로기관 등록

□ 근로장학생 역량개발을 위한 우수 근로지 확대

- 교육청, 공공기관 및 민간 우수 기업 등을 중심으로 장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양질의 교외근로지 제공
- (대학 행정 부담 완화) 신규 근로지 발굴이 어려운 대학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부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재단발굴형 근로지 확대
 - ※ 2025년 약 9천 개, 2026년 500개 추가 목표
- (교외근로 의무비율) 대학이 관리·준수해야 할 총 근로시간 대비 교외 근로시간 비율을 상향(29% → 36%)하여 교외근로 활성화 유도
- (성과 공유) '우수 근로 사례 공유 게시판'*을 통해 우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학습함으로써 근로활동의 질적 수준 제고
 - *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협력 유공 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 부여

※ 2026년 업무처리기준 III-1 예산 관리 > 예산 배정

②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 및 시급 단가 인상

- (지원인원 확대) 대학생 취업역량 제고 지원을 위한 지원인원* 확대

* ('25) 13,700명 → ('26) 14,000명

- (시급단가 인상) '26년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시급단가* 인상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

* ('25) 12,430원 → ('26) 12,790원

☐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예산 배정 기준 개선

- (예산 배정 개선) 대학 신청금액 및 최근 3개년 실적 등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한 예산 배정 산식 개선으로 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 기대

☐ 사업 활성화를 위한 멘토링 제도 개선

- (활동기관 확대) 활동기관 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신규로 추가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
- (제재 사유 추가) 장학생 제재 사유로 근태 및 업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장학생 제재 관리 강화
-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활동기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상세화를 통한 안전사고 철저 예방

IV

세부 사업별 지원방안

① 국가근로장학금

□ 예산 현황(사업비): 4,987억 원

- 교내 국가근로장학금(2,260억 원), 교외 국가근로장학금(2,727억 원)

【 2026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사업비	'25년	'26년	증감
소 계	455,104	498,661	(+) 43,557
교내 국가근로장학금	249,136	225,967	(-) 23,169
교외 국가근로장학금	205,968	272,694	(+) 66,726

- (대학별 예산 배분) '26년 총 사업예산 범위 내 대학별 예산 신청금액, 전년도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근로유형별 예산 배정

□ 지원 대상

- (대학) 국내 전체 대학 중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참여 신청하여 재단이 승인한 대학
-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한 자

【 근로장학생 선발 요건 】

기본 요건			
성적	C ⁰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단, 학생이 장애인,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가능		
소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단, 학부모 실·폐업 등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가능		
우선선발 요건			
경제적 수준	1순위	2순위	3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 9구간 이하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 지원내용

- (장학금 시급단가) 교내근로: 10,320원 / 교외근로: 12,790원
 - ※ 단,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에 한하여 교외근로 시급 적용(대학 대응투자 20% 이상)
 - (대학 대응투자) 교내근로: 시급의 20% 이상 / 교외근로: 대학 자율
- (근로시간) 일, 주, 월,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1일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학기당 최대
	월당 최대	주당 최대	
8시간	80시간	40시간	640시간

- ※ (학기 중 최대근로시간 예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은 학기 중 월당 160시간까지 활동 가능
- ※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인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은 학기당 최대 800시간 근로 가능

□ 근로유형별 활동 내용

구분	분류	근로내용
교내근로	일반 교내근로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업무 등 지원
	봉사유형	• (장애대학생 봉사) 장애대학생의 학업 및 이동 보조 • (외국인유학생 봉사) 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외근로	일반 교외근로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업무 등 지원 ※ 재단 운영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포함
	취업연계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의 업무 경험 제공

□ 사업 운영 중점사항

- (교외근로 의무비율) 총 근로시간 대비 교외근로시간* 비율을 36% 이상으로 관리 필요
 -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집행실적 포함
- (예산 배정 제한) ‘25년도 교외근로 비율이 10% 미만인 대학은 ‘26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배정 제한

②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예산현황(사업비): 578억 원

[2026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비	'25년	'26년	증감
대 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55,000	57,800	(+) 2,800

- (대학별 예산배분 기준) 전년도 집행률, 멘토 규모, 사업운영결과 보고 기한 준수 여부, 활동기관 확대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배정

□ 지원대상

- (대학)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사업에 참여 신청하여 재단이 승인한 대학
- (학생)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참여대학의 재학생

[기본 선발 요건]

구분	대 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성적	성적 C ⁰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경제적 수준	무관
기타사항	대학이 추천서를 작성하여 승인하는 경우 재학 중 1회 성적 기준 적용 완화(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승인이력 포함)

□ 지원내용

- (장학금 지급 단가) 12,790원
- (근로시간) 연간 최소 및 일, 주, 월,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1일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학기당 최대	연간 최소
	월당 최대	주당 최대		
8시간	80시간	40시간	640시간	1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활동시간 예외)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월당 최대 160시간까지 활동 가능

V

향후 계획 및 일정

① 국가근로장학금

- ☐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대학 안내('26. 2월)
- ☐ 대학별 사업 신청 및 예산 배정
 - 대학별 예산 신청 및 (가)예산 배정(대학→재단, '26. 2월)
 - 대학별 '25년 운영결과 보고 및 '26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대학→재단, '26. 3월)
 - 대학별 연간 예산 배정 및 1차 정기 교부금 지급(재단→대학, '26. 4월 초)
 - 예산 조정에 따른 2차 정기 교부금 지급(재단→대학, '26. 9월)
 - 대학별 예산 과부족 수요에 따른 추가 예산 조정(재단→대학, '26. 10월~)
- ☐ 학생 신청
 - '26년도 1학기: (1차) '25. 11. 20.~12. 26., (2차) '26. 2. 3.~ 3. 17.
 - '26년도 2학기: (1차) '26. 5월 중, (2차) '26. 8월 중
- ☐ 대학별 사업 운영결과 보고
 - '26년도 1학기: '26. 9~10월 경
 - '26년 사업 운영결과 보고: '27. 3월 경 ※ 일정은 변동 가능함

②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대학 안내('26. 2월)
- ☐ 대학별 사업 신청 및 예산 배정
 - 대학별 예산 신청 및 (가)예산 배정(대학→재단, '26. 2월)
 - 대학별 '25년 운영결과 보고 및 '26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대학→재단, '26. 3월)
 - 대학별 연간 예산 배정 및 1차 정기 교부금 지급(재단→대학, '26. 4월 초)
 - 예산 조정에 따른 2차 정기 교부금 지급(재단→대학, '26. 9월)
 - 대학별 예산 과부족 수요에 따른 추가 예산 조정(재단→대학, '26. 10월~)
- ☐ 학생 신청
 - 2026년도 1학기('26. 2월~8월, 상시)
 - 2026년도 2학기('26. 8월~'27. 2월, 상시) ※ 일정은 변동 가능함

참고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세부사업 비교표

구분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추진 근거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5조(국가의 책무)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5조(국가의 책무)
사업 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직업 체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대학생이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지원과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장학금)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사업 규모	('26년 예산) 498,661백만 원 ('26년 지원인원) 151,000명	('26년 예산) 57,800백만 원 ('26년 지원인원) 14,000명
지원 기간	1학기: '26.3.1. ~ '26.8.31. 2학기: '26.9.1. ~ '27.2.28.	연간: '26.3.1. ~ '27.2.28.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 중, 아래의 성적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성적) C^o수준(70점/100점) 이상 (소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 중, 아래의 성적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성적) C^o수준(70점/100점) 이상 (소득) 무관
지원 분야	- 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公益)에 이바지하는 모든 업무 - 단, 단순 영업, 판매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제외	- 장학생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통한 학습지원 및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지도) - 단, 활동기관의 업무보조 및 단순노무 (청소, 빨래 등) 등의 활동은 불가
추진 체계	(교육부) 기본계획 수립 (재단)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수립·공고, 대학별 예산 배정 및 결산 (대학) 장학생 선발 및 배정, 장학금 지급, 운영 결과 보고	